

신·재생에너지설비·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(최대 6%)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

## □ 개 요

-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

## □ 지원내용

- (근거)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(‘에너지절약시설’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
- (지원내용) 내국인\*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\*\*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‘소득세’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) 또는 ‘법인세’에서 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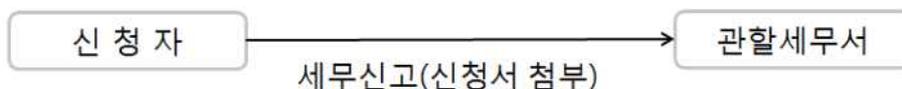
\*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

\*\*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

구 분	①중소기업	②중견기업	③그외기업
비 율	6%	3%	1%

## □ 지원절차

- 신청절차



-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
-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-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
-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※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세무담당자에게 확인

\* 국세청 : 홈페이지 <http://www.nts.go.kr> TEL : 126

□ **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분류기준**

<p>①중소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제조업)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이하</li> <li>○(광업·건설업·운송업)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 이하</li> <li>○(도소매·서비스업)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50인부터 300인까지, 매출액 기준 50억부터 300억까지</li> </ul> <p>*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“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, 자산규모,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,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”</p>
<p>②중견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상한기준)상시 근로자수 1,000명 이상,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,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,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</li> <li>○(규모기준)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(제조업 기준)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정 (공공기관·금융·보험업의 경우 제외)</li> <li>○(독립성 기준)자산 5,000억 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/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, 근로자 수 등 해당 업종별 규모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</li> </ul> <p>*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, 3년 평균 매출이 1,500억 원 이상이지만,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</p>
<p>③그외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업</li> </ul> <p>※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 함</p>

[별표 8의3] <개정 2017. 3. 17.>

**에너지절약시설**(제13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시 설 내 용	적 용 범 위
1.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	가. 산업·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	<p>1) 보일러·요(窯)·로(爐) 및 그 부속장치(산업·건물 공통)</p> <p>가)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.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,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[기존시설을 개체(改替)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</p> <p>나) 요(窯)·로(爐) 요·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,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[기존시설을 개체(改替)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</p> <p>다)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라)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(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마)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(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2)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내·난방사업,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·수송·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[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(改替)하는 것은 제외한다]</p> <p>3) 폐기에너지회수설비(산업·건물 공통)</p> <p>가) 연소폐열·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</p> <p>나) 연소폐열·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·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</p> <p>다)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</p> <p>라) 폐열회수형 히트펌프(공기열원은 제외한다)</p> <p>마) 클링커 냉각기(Cross Bar Cooler)</p>

- 4)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(산업·건물 공통)
  - 가) 원심식 다단진공펌프(실위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나) 고온응축수펌프(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다) 초고온공냉식년썰캔드모터펌프
  - 라)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(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마) 압축기(인버터제어)
  - 바) 고속 터보블로워[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(rpm) 이상으로 한정한다]
  - 사) 고효율 변압기(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)
  - 아) 프리미엄급(IE3) 삼상유도전동기(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)
- 5) 그 밖에 산업용 설비
  - 가) 어큐물레이터
  - 나) 압축공기제습장치
  - 다)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(인버터) [220킬로와트(kw)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]
  - 라)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
  - 마) 다중효용증발관(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)
  - 바) 산소부하시스템
  - 사) 증기재압축장치
  - 아)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
- 6) 건물에너지 절약설비
  - 가)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(온도·조명·열원·풍량·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나) 제습공조장치(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)
  - 다) 가습공조장치(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)
  - 라) 스프링쿨시스템(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마) 야간단열장치

		바) 태양광차단장치 7)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)
	나. 전력수요관리 설비	1) 역률자동조절장치 2)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(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) 3) 전기대체냉방시설(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) 가) 가스냉방시설 나) 축열식냉방시설 다) 흡수냉방시설
	다. 고효율인증기자재	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) 엘이디(LED)조명(램프 및 등기구) 2) 고효율인증보일러 3) 무정전전원장치 4)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) 원심식 송풍기 6) 향온향습기 7) 고기밀성 단열문 8) 전력저장장치(Energy storage system)
	라.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	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) 자동절전제어장치
2. 신·재생에너지보급시설	신·재생에너지 생산시설	「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·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
3. 그 밖의 시설	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	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